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656
----------	------

발의년월일 : 2006. 7. 10

발 의 자 : 이재호 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2005. 8. 4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 2006. 5.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기초의원들이 당적을 보유함 따라, 정당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명칭 변경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교섭단체구성에 관한 조문 신설 (안 제2조)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안 제4조 2항)
- 제9조의 제목중 “위원의 선임”을 “위원의 선임 및 개선”으로 하고 동조중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여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의 선임과 개선 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역할을 강화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4조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위원회” 다음에 “교섭단체와 상임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2조를 제2조의 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교섭단체구성) ①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선임)”를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로 제9조제1항중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를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총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의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여, 그리고 소속의원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교섭단체 이외의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 활동 단체에 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생략) <u>(신설)</u>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9조 (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u>(신설)</u>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u>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u>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 2 (상임위원회 설치) (현행 제2조와 같음)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상임위원은 <u>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u>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의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여, 그리고 소속의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교섭단체 이외의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활동 단체에 한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91. 04. 11 ┐
| |
└ 조례제1126호 ┘

개정 1992.05.12 조례제1204호 개정 2002.05.27 조례제1821호
개정 1993.01.09 조례제1247호 개정 2003.07.30 조례제1873호
개정 1995.04.21 조례제1372호 개정 2003.10.20 조례제1879호
개정 1996.03.23 조례제1424호 개정 2003.12.01 조례제1885호
개정 1997.03.22 조례제1478호 개정 2004.08.02 조례제1933호
개정 1997.09.29 조례제1507호 개정 2005.03.21 조례제1975호
개정 1998.07.09 조례제1547호 개정 2005.10.28 조례제2015호
개정 1998.10.26 조례제1555호 개정 2006.02.16 조례제2039호
개정 1999.06.25 조례제1606호 개정 2006.08. 조례제 호
개정 1999.09.27 조례제1634호
개정 2000.10.18 조례제1729호
개정 2000.11.21 조례제1745호
개정 2002.05.02 조례제181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 .8〉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의회에 1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06.8〉
②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6. 8〉
③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신설 ‘06. 8〉
④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6. 8]

제2조의 2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2인이내[개정 2002.05.27]
2. 자치행정위원회 10인이내[개정 2002.05.27]
3. 경제환경위원회 10인이내[개정 2002.05.27]
4. 사회복지위원회 10인이내[개정 2002.05.27]
5. 도시건설위원회 10인이내[개정 2002.05.27]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개정 2000.11.21, 2002.05.27, 2003.12.01, 2004.08.02]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사업소 중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환경위원회[개정 2003.07.30,2003.12.01,2004.08.02,2005.03.21,2005.10.28,2006.02.16]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중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중 상하수도사업소, 성남시푸른도시사업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사회복지위원회[개정 2000.10.18, 2002.05.02, 2002.05.27, 2003.12.01, 2004.08.02, 2005.10.28, 2006.02.16]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중 보건위생과 직속기관 중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사업소 중 영생관리사무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성남시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도시건설위원회[개정 2003.12.01, 2006.02.16]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신설 2006. 8 >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폐지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 임기는 기존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 임기와 같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④의회는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신설 2003.10.20]

⑤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3.10.2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특별위원회는 구성 직후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심사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 8 >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의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여, 그리고 소속의원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의원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교섭단체 이외의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활동 단체에 한한다<신설 2006. 8 >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에 하여야한다.<개정 2006. 8 >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중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991.04.11 조례제1126호)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 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 전까지 있었던 성남시의회위원회에관한조례 제20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2.05.12 조례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1.09 조례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21 조례제1372호)

①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임기) 제2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부 칙 (1996.03.23 조례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22 조례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9.29 조례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7.09 조례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10.26 조례제155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신설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선거하며,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승계한다.

부 칙 (1999.06.25 조례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27 조례제163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승계하고,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승계한다.

부 칙 (2000.10.18 조례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1 조례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02 조례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27 조례제1821호)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7.30 조례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20 조례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01 조례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8.02 조례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21 조례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28 조례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2.16 조례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8. 조례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